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70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7.

발의자 : 이만희 · 서천호 · 구자근
김기웅 · 엄태영 · 김소희
김상훈 · 임종득 · 신동욱
권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,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.

그러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종료 시 농업 · 농촌 개발 사업 추진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.

또한, 한국농어촌공사가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이 2023년 삭제되어 동 재원을 활용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음.

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, 한국농어촌공사가 「한국농

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
해서는 재산세도 감면해주려는 것임(안 제13조제2항)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3 중 “취득하는”을 “취득·소유하는”으로, “취득세”를 “취득세 및 재산세”로, “경감한다”를 “각각 경감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산세 경감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2항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부동산에 대해서는 <u>취득세</u> 의 100분의 50을 <u>경감한다</u> . 2. ~ 5. (생 략) ③ · ④ (생 략)	<u>유하는</u> ----- <u>취득세 및</u> <u>재산세</u> ----- <u>각각 경감한다</u> . 2. ~ 5. (현행과 같음)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